

「고흥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2월 22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## 고흥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개정사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 1. 13. 시행)으로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고흥군의회와 소속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(안 제1조, 제2조)
  - 목적조문: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 → 제51조로
  - 범위조문: 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 내지 116조의 규정에 의한  
→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부터 129조에 따른  
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→ 제131조

3. 자치법규안: 별도 붙임

4. 예고기간: 2021. 12. 22.~12. 27.(5일간)

### 5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2. 27.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의회의회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(3) 그 밖의 참고 의견 등

#### 나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(1) 일반우편: (59542)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고흥군의회의회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
- (2) 전화: 061-830-6065, FAX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## 고흥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”를 “제51조에 따라 고흥군의회와 소속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법 제126조부터 129조에 따른 소속행정 기관장
5.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<u>고흥군의회</u>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<u>위원회</u>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51조</u>에 따라 <u>고흥군의회와 소속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	<p>제2조(범위) ----- ----- -----.</p>
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법 제113조 내지 116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<u>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</u></p>	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법 제126조부터 129조에 따른 소속행정 기관장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</u></p>
	<p><u>부 칙</u> <u>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[붙임 3]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